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1. 서 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WTO/SPS 체제의 무역자유화로 수입식품이 급격히 증가되고, 수입국의 다변화로 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마련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식품수입자의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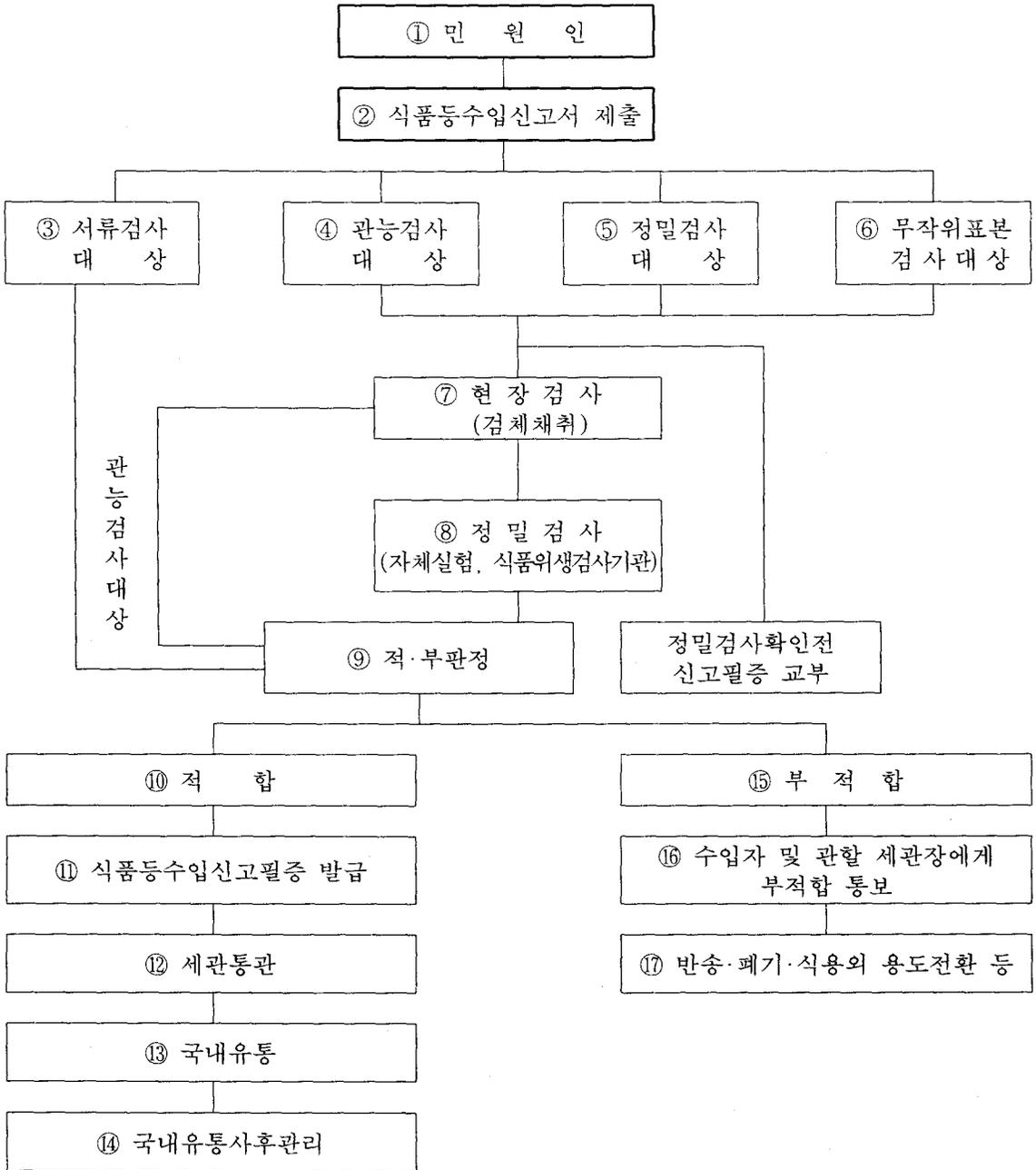
- 가. 자가소비용 원료 및 판매목적의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식품첨가물 제조업에 함함)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나. 식품 수입자는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다. 다음의 질병이 있는 자는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전염병, 제3종 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B형간염(비활동성 간염은 제외)
- 후천성면역결핍증(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3. 수입식품등의 신고

- 가. 수입식품의 검사는 서울, 부산, 경인 지방청과 국립군산, 목포, 여수, 통영, 마산, 울산, 포항, 동해, 제주검역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등의 수입신고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나. 수입수산물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검사소에, 수입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절차〉



- ① 민원인 :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자 또는 실수요자)
- ② 식품등수입신고서 제출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제 1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

- 검역소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 수입신고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수입승인서 사본등 5종 중 해당품목 관련사항
- ③ 서류검사 대상(처리기간 : 2일)

- 신고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한글표시 기준 검토 포함
- 대 상 : 자사제품제조용원료, 동일사동일식품등
- ④ 관능검사 대상(처리기간 : 3일)
 -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 대 상 :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원료성 농·임·수산물
- ⑤ 정밀검사 대상(처리기간 : 10일)
 -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 대 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함유 문제제기 식품등
- ⑥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처리기간 : 5일)
 -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표본추출 계획에 의하여 검체로 선정된 식품등을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 대 상 : 동일사동일식품등, 자사제품 제조용원료, 외화획득용 식품등
- ⑦ 현장검사
 - 보관창고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능검사요령에 의거 실시
 - 정밀검사 시료채취는 식품공전 제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거 실시
- ⑧ 정밀검사
 -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정밀검사 실시
- ⑨ 적·부 판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 ⑩ 적 합 : 식품위생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적합
- ⑪ 신고필증발급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⑫ 세관통관 : 관세 납부후 내국 물품화
- ⑬ 국내유통 :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 등으로 활용

- ⑭ 국내유통사후관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
- ⑮ 부적합 : 식품위생법령 관련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부적합
- ⑯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 ⑰ 반송·폐기·식용외 용도전환 등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
- ⑱ 조건부 수입신고필증 교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신선한 식품등

4. 수입식품등의 검사

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식품등
-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및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및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는 기구의 원재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과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식품등
- 식품첨가물중 화학적합성품을 제조하는 원료(다만, 혼합제제의 성분인 되는 것은 제외) 및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나.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검사의 종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이 있으며 그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검사 및 대상(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일)

서류검사는 신고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수출용원자재를 포함)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식품등과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이 경우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한함)
-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하는 스테인레스·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로 된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등(동일사 동일식품등)
 -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 및 재질이 같은 것
 - 농·임·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국·품명·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용 식품과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2) 관능검사 및 대상(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관능검사는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등이 대상이다.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로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
- 서류검사의 대상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과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요구한 것으로 그 물량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7] 식품등의 수거 대상 및 수거량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이하인 식품등

3) 정밀검사 및 대상(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정밀검사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등이 대상이다.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

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등
및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
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
된 사실이 있는 식품등
-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
품등 및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
인이 수입하는 식품등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호, 제2호의 식품등은 수입신
고서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
밀검사를 원칙으로 함.

4) 무작위표본검사 및 대상(처리기 간 : 접수일로부터 5일)

무작위표본검사는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
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등이
대상이다.

-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 동일식품
등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다만, 정
제·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원료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으로서 개별품목당 수입신고한
수량이 50킬로그램이상인 식품등
- ※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 가
온 보존대상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 별도지시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는 제외

5)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제
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유통전문 판
매업 및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
의 신고수리한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의

승인을 얻어 서류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
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 식품등의 검사방법

1) 검사기관 및 동 기관의 유의사항

- 수입식품등의 검사는 지방청장 또
는 검역소장이 행하고, 수입신고인
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의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직
접 검체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인이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는 검사를 행한 검사기관에 검사수
수료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보세구역등에서 수입식품등의 검사
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제시하고, 지방청장 또
는 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
여 그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동 식
품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봉인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의 수입신
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
하는 수입 최소량에 미달되는 식품
등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를 받아야 하며, 재수입되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량이 위의 규정에 의
하여 정밀검사한 동일사 동일식품
등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수입 최소
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
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
자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은 식품등
의 기준 및 규격중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하고 식품위생검사기
관의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
춘 자가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

의 관리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 때에는 수거증 발급

- 검체채취량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7]식품 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에 의하며 다만, 검체의 최소 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의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음.

3) 검체의 정밀검사 및 그 결과의 통보

-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이 수입식품등의 검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행하고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는 이전의 정밀검사결과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 지체없이 당해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을 포함)에게 통보
-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정밀검사결과에 대한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정밀검사 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 수입신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검사증명서등을 인정하여 당해 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음.
-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와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라. 수입식품등의 전산관리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의 신고사항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식품등의 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등의 방법으로 교부

마. 신고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제정등

-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처리요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수입식품등검사지침에 의함.
-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그 유통기한 만료일을 명시하여 교부

바. 수입식품등의 통관업무 관련 부서 협조사항

- 세관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검체를 직접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의 출입에 협조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체채취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당해 보세구역의 장에게 제출

5.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가.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관련 내역통보

-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식품의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및 기타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 중 한약재로도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입할 경우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를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시마다 수입업소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에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입내역 통보

-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를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소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관세법 제145조에 의거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교부내역(통관자료)을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동 품목의 수입신고 및 검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또는 폐기등을 신속히 행하고 관리하여야 함.
-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의 표시사항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입자가 통관후 표시를 보완코자 요청시 표시보완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표시보완 확인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요청 받은 소재지 관할 기관장은 그 결과를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통보
-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신고내용을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별지 제7호 서식)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나. 부적합 수입식품 및 행정처분업소 관리

- 수입식품등중 정밀검사 및 무작위 표본검사 결과 부적합된 동일사 동일식품등 또는 유해물질등이 함유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던 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는 3회이상 실시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식품등수입판매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중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기간동안 수입신고를 할 수 없음.
- 영업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이 영업소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한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번호, 위반내용 등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다.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등에 출입·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 식품등의 무상수거와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그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1회이상 실시(식품위생법 제1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2조)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영업자는 당해 식품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도록 노력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수입식품등과 관련한 행정처분 내용

(수입식품등 관련 행정처분 내용)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p>법 제4조(판매등 금지) 위반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것(식품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p> <p>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것</p>	<p>영업정지 2월 과 당해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월 과 당해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월 과 당해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월 과 당해 제품 폐기</p>	<p>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 제품 폐기</p> <p>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 제품 폐기</p>
<p>법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금지) 위반 가. 유독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때</p> <p>나. 유독기구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때</p>	<p>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1일</p>
<p>법 제9조(기준과 규격) 위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때</p>	<p>품목제조정지 15일</p>	<p>품목제조정지 1월</p>	<p>품목제조정지 2월</p>
<p>법 제16조(수입신고등의 신고) 위반 가. 자사제품 제조원료용으로 수입한 식품등을 별도의 승인없이 목적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때</p> <p>나. 식품등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p> <p>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때</p> <p>라.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아 수출품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한 때</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2월</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2월</p> <p>영업정지 2월</p> <p>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영업정지 3월</p> <p>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법 제29조(품질관리 및 보고) 및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인 경우</p> <p>가. 다목·자목·카목 또는 거목 또는 너목 위반</p> <p>나. 마목·자목·카목 또는 파목 위반</p> <p>다. 아목 또는 차목위반</p> <p>라. 위 (1)내지 (3)외의 준수사항위반</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3일</p> <p>시정명령</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3일</p>	<p>영업정지 2월</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7일</p>